

2024년 제2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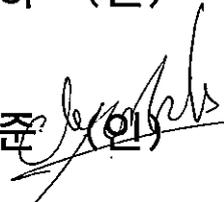
연번	안건명	의결사항	수정사항
1	2023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 기업 회계 결산(안)	무반의결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정의결	
3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무반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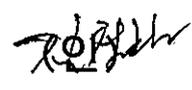
2024. 4. 23.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연두  위원 박훈 (인)

위원 임정하 (인) 위원 손정수 

위원 최용준  (인) 위원 형남원 

위원 송지희  (인) 위원 김철한 

위원 류순태 (인) 위원 임은희  (인)

위원 김도경 (인) 위원 제세영 

2024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요일) 10:00 ~
개최장소	대학본부 7층 소회의실
개최방식	대면심의
참석위원 (7명)	산학협력단장(정연두), 행정처장(손정수), 산학협력부단장(최용준), 형남원, 송지희, 김철한, 임은희, 제세영
불참위원 (5명)	기획처장(임정하), 박훈, 류순태, 김도경

□ 회의 심의안건

- (안건1) 2023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
- (안건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안건3)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회의내용

- **산학협력단장:** 안녕하십니까? 현재 8명 참석으로 운영위원회가 성원 되었으며, 2024년 제2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23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된 회계 결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계는 2023년도 수입 71,321,447천원과 이월금 37,274,600천원을 합하여 108,596,047천원이며, 지출총계는 69,155,211천원 및 차년도 이월금 39,40,836천원을 합하여 108,596,047천원입니다. 학교기업 결산현황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더고구마:** 안녕하십니까, 더고구마 김선형 교수입니다. 더고구마 매출은 고구마화장품, 묘목 등의 판매 증가로 증가하였으며, 9,000만원 상당의 선수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학교측의 불의의 사고로 현재 해당 주문을 감당할수 없는 상황으로 9,000만원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학교기업 운영이 힘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학교측의 보상등에 관한 상황을 확인해보고 산학협력단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공간분석연구소:**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의 선정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중단으로 인한 운영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 인건비 및 퇴직금이 전혀 지출되지 않았는데요. 직원이 없는건가요?
- **시공간분석연구소:** 네, 현재 학교기업 전담 직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원안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단:** 네
- **산학협력부단장:** 이어서 산학협력단 수입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용역, 및 계약학과, 환경부 특성화대학사업 등으로 인한 산학협력, 지원금 수익이 각 2,751백만원, 1,49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간접비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장기금융상품은 이율 변동을 고려하여 중도해지하고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 가입으로 안하여 장기금융상품은 감소하였으나, 운영외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수익 증가에 따른 산학협력비, 지원금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연구활동경비지원사업, 대응자금,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부설연구소 지원금액 증가로 인하여 간접비지원사업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학협력단장 :** 산학협력단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원안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단:** 네
- **산학협력단장 :** 두 번째 안건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기존 계정의 추가 적립 관련 문구 삽입, 적립금액의 계상 명확화, 계정 이관 허용 및 적립금액의 변경 허용,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및 기존 양식 반영 등입니다.
- **김철한 위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내역의 '사용액'과 상세내역의 '사용액'은 각 각 어떤 의미로 상용된 것인가요? 중복된 용어 사용으로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사용신청내역의 '사용액'은 '총 사용액'이며, 사용액 상세내역의 '사용액'은 각각 건별의 사용액입니다. 양식의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 기타 의견이 더 없으실 경우, 두 번째 안건은 양식의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 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단**: 네

■ **산학협력단장** : 세 번째 안건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운영지침 목적에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반영하였고, 제3조, 연구장비심의 적용대상에 대상 및 범위 상세설명 추가, 제4조1항2목의 심의 대상 아닌 기능항목 삭제, 제4조1항4목 연구장비 심의 기능에 산업기술개발장비 적용 부분 추가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내용에 따라 별지서식 제1호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 **산학협력단장** : 질문이 없으시면 원안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단**: 네

■ **산학협력단장** :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위원님들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